

법인 후불 운전대행 서비스 약관

더콜 생활서비스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운전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신청자를 “갑”, 서비스 제공자 더콜생활서비스를 “을”로 칭한다.

제1조 계약기간 및 효력발생

이용신청서에 고객정보를 을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개시 보증금 10만원과 인원에 따른 추가금(3명 초과 1인당 3만원)(2017년 1월 기준) 을 입금하면 영업일 기준 다음 날부터 등록된 이용자에 한해 등록된 지역에 서비스가 가능하다. 등록지역 외 타지역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일 기준 1일전에 요청한 후 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제2조 운전대행 서비스 요금

- 가.서비스요금(VAT별도)은 ‘별첨’의 운전대행 표준요금표를 적용한다.
- 나.운전대행자를 대기시켰을 경우 대기요금을 적용되며, 중간 경유지를 거칠 시에는 경유지 요금을 추가된다.
- 다.물가변동에 따라 운전대행료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갑"과"을" 의 합의를 거쳐 재조정할 수 있다.
- 라."갑"의 실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3조 요금 정산

- 가.요금은 "갑"의 이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을”은 월 말 또는 지정일에 해당 월 이용정보와 요금을 자료로 송부하고 “갑”은 운행기록 수취 후 20 영업일 이내에 결제 하며 현금 또는 카드로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사업비 지출증빙도 가능하고 VAT는 별도이다.

제4조 서비스 제공

- 가."을"은 "갑"의 (등록된)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서비스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단, 주간 및 장거리 서비스의 경우 "갑"의 이용자는 "을"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서비스 가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지역 외 타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일 기준 24시간 전에 사전에 등록 요청하여 등록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제5조 운전대행자

- "을"의 운전대행자는 만25세 이상이며, 유효한 국내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운전경력 12개월이 경과한 자로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교통법규 위반처리

- 가."을"은 대한민국 내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모든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보상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 나."갑"의 이용자는 "을"에게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범칙금 납부통지서 등 증빙으로 제시해야 하며, "을"은 제시된 자료처리를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7조 금지 행위

"을"은 운전대행서비스 제공 중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갑"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한다.

가. 제5조 운전대행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시키는 행위

나.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다. "을"은 "갑"의 등록된 이용자의 영업상 비밀 또는 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정보 등 본 계약의 체결 및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일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기사수급이 원활치 못한 상황이 있을 때 담당 콜센터에서 표준요금 외 추가요금을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미리 협의한 금액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요금조절을 하기도 한다.

제8조 보상 및 사고처리

"을"은 갑"의 이용자에게 운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리운전자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 한도 내의 민사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계약의 해지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며,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한 달 전에 서면이나 유선상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간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자동 연장되기로 한다. 서비스 개시 보증금의 반환은 계약해지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